

🔍 주요 질의 응답



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 될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 해당여부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중소기업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그 밖 업종 : 5명 미만(「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2조 참고)



영업·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또는 ‘영업 허가 · 신고 ·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대장 등’에 기재된 면적으로 확인이 가능함.



대형 노래방을 운영하는 영업주임. 이용객끼리 다툼으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 해당여부?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이 아닌 이용객끼리 다툼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이 영업장 면적 1,300㎡인 나이트클럽(유흥주점)을 운영함. 영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상시근로자)이 45명인데, 이 경우 법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1,000㎡ 이상 50인 미만 다중이용업소로 2024년 1.27.부터 법 시행 유예 규정 기한이 종료되어 적용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경영자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영업주나 관리자로서 실질적인 관리의 책임이 있음으로 적용됨.

🔍 주요 질의 응답



영업장 면적이 2,000㎡인 영화상영관을 운영함. 영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상시근로자)은 60명인데, 이 경우 법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2022.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법 시행(2022. 1. 27.) 당시에는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었으나, 추가 채용을 통해 50인이 됨. 유예기간(2024. 1. 26.) 전에 화재로 인해 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1,000㎡ 이상 다중이용업소로 법 적용 대상이나 상시 근로자 수(50인 이상) 여부에 따라 법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음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 받나요?



안전계획서 미작성에 따른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영업·시설 등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서 안전계획서 작성여부를 확인 하게 될 것이며, 미작성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최종판단 시 참고 할 수 있음.



미술관(연면적 3,000㎡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이번 집중호우로 건물의 일부가 파손됨. 파손된 상태로 유지하다가 유리창 등이 떨어져 관람객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나요?



파손원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됨.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소방법령 상 다중이용업소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 등 안전관리 의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를 드리니 꼭 읽어보시고 안전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1 중대재해 개념

중대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구분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정의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공공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재해
기준	사망자	· 1명 이상
	부상자	· 동일사고 10명이상 (2개월 이상 치료료)
	질병자	· 동일원인 10명이상 (3개월 이상 치료료)
피해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2 의무주체(처벌대상)

구분	의무주체 (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공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제외됨



중대시민재해 주요내용

1 중대시민재해란?(법 제1조 및 제2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아래 피해가 발생한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법 제2조)

구분	대상
공중이용시설	· 「시설물안전법」(1·2종, 3종 일부) · 「실내공기질법」상 시설(청사 등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 · 「다중이용업소법」(바닥면적 1,000㎡ 이상)
원료제조물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 · 제조 · 판매 ·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공중교통수단	· 도시철도차량, 철도 동력차·객차, 시외(고속)버스 등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 일반 · 휴게 음식점, 단란 ·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등, 학원, 목욕장업, PC방,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 안마시술소, 수면방, 콜라텍업, 전화방업, 만화 · 방탈출 · 키즈카페

3 책임의 주체(법 제3조)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법 제2조 제8호)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 ·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법 제2조제9호 가목)

4 사업주등의 안전 및 보건 의무(법 제9조)

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 공중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개선	· 공중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제한, 보수 보강 등 그 개선에 대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2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사상자등에 대한 긴급구조조치, 긴급안전점검, 추가 피해 방지 조치, 신고, 개선조치 등 대응 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3	대피훈련	· 공공교통수단, 「시설물안전법」1종 시설물에서 비상 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시 대피훈련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및 이행



소방 관련 법령 의무 이행 사항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정기 점검	▶ 매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 같음 ▶ 소방관리업자에게 위탁 가능
「소방시설법」	제25조 자체 점검	▶ 작동기능점검 : 연1회 ▶ 종합정밀점검 : 연1회 ※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에도 작동기능점검을 하여야 함. ▶ 소방관리업자에게 위탁 가능

5 중대시민재해 처벌내용(법 제10조)

구분	경영책임자 처벌	기관 양벌규정	손해배상
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액의 5배 이하
부상자·질병자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여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 제9조의 의무사항을 충실히 수행시 처벌 받지 않음

6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법 부칙 제1조제1항)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1.27.부터
-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2024.1.27. 부터